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5
----------	-------

발의연월일 : 2025. 10. 17.

발 의 자 : 김정호 · 김남희 · 허종식
허성무 · 이연희 · 서왕진
박 정 · 윤후덕 · 임미애
김용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장등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그런데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 중 일부가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가맹 등록된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의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한다.

1.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6조의6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4제2항에”를 “제26조의4제2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6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생략)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u>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u> 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 ----- <u>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u><신 설></u>	1. <u>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u>
<u><신 설></u>	2. <u>시장등의 구역 밖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u>
<u><신 설></u>	3. <u>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	③ <u>제2항제1호</u> ----- ----- ----- -----

용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u>제26조의4제2항에</u>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u><신 설></u> 3. (생 략) ②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6조의4제2항제1호에</u>----- ----- --- <u>2의2. 제26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u>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